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9.2.12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/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02-3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 심의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경관법』 제28조 및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○ 주동의 입면 색상을 좀 더 단순화 하고, 태양광 판넬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.(권장)			
- 야간 경관조명 및 코너부 조명 계획도 발광 및 투광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개선 바람.			
○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보차혼용통로 상에 있는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와 가까워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취약하므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개선 바람.			
○ 어린이집 주출입구 옆에 아동의 보호와 관찰을 위하여 원장실을 설치하고, 유희실 및 보육실 중앙의 벽체 및 기둥은 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평면 조정 바람.			
○ 경로당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중앙의 기둥이 돌출되지 않도록 평면 조정 바람.			
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			
○ 지식산업센터의 근사고유주기는 RC모멘트( $T=0.073(hn)^{1/4}$ )골조를 적용하였는데 적용시스템은 건물골조시스템으로 건물내에 상당한 코어가 있으므로 기타 골조에 해당하는 기본 주기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			
○ 지하주차장 직선 장구간 통로에 이미지 험프 등 과속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9.2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9.2.12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/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02-3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 심의			
<b>&lt; 공통사항 &gt;</b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[ R1 획지 ]			
가. 녹색건축인증 최우수(그린1) 등급 적용			
나.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+등급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16% 이상 적용			
[ I1, I2 획지 ]			
가. 녹색건축인증 최우수(그린1) 등급 적용			
나.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비주거 1+등급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16% 이상 적용			
[ N1, N2 획지 ]			
가. 녹색건축인증 일반(그린4) 등급 적용			
나.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비주거 2등급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7% 이상 적용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9.2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